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·위험작업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에 대해 인용된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, 교육기관 인력·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을 정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	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 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	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서 규정 하는 자격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1 제5호1) 중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”을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표 제7호1) 중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”을 “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표 제8호의 자격·면허·기능 또는 경험란 중 “「원자력법」”을 “「원자력안전법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